

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



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에서 서면계약 문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의 조기정착을 위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부담 경감조항(장기계속공사 연차별 계약 이행·완료 시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 반환)을 신설하는 등 '건설업 종 표준하도급계약서'를 대폭 개정해 지난 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진됐다.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의 정착을 위해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라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·보급하여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. 이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www.kmcca.or.kr)의 <커뮤니티-협회내공유자료>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[편집자 주]

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주요개정 내용

■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보증부담 경감 신설(제7조제9항, 제23조제5항)

- 장기계속공사에서 연차별 계약이 이행·완료된 경우 원사업자가 이행완료부분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금을 수급사업자에게 반환하도록 의무조항 신설
- 장기계속공사에서 수급사업자의 하자보수 개시 시기를 총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연차별 공사 완료시점으로 변경*
※ (변경전) 전체공사 완공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 → (변경후) 연차별 공사 완료후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시

■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배치 부담 완화(제9조제2항)

- 수급사업자의 현장대리인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개에서 3개로 확대 (건설산업기본법 내용 반영)

■ 하도급계약 확인절차 및 추정조항 신설(제1조의2)

- 원사업자가 구두발주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확인요청 권리를 규정하고,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부인 의사를 회신하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의 확인요청대로 하도급계약이 추정되는 효력 규정 (하도급법에 도입된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반영)

■ 감액금지 원칙 및 감액서면 사전발급 조항 신설(제20조의2)

- 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하되, 감액사유·기준, 금액 등이 명시된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도록 원사업자의 의무 규정

■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(제20조의6)

-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 신고 및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

■ 직접지급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 통보 조항 신설(제21조제3항)

-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을 대금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수급사업자의 의무규정 신설

■ 선금금 사용내역 통보 및 목적외 사용시 반환 조항 신설(제22조제6항)

- 수급사업자가 선금금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목적외 사용시 반환토록 함

■ 시행일자 : 2012. 1. 5.